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47 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:서미화・윤종군・박민규

이기헌 • 정진욱 • 김원이

임호선 · 이성윤 · 김 윤

문금주 • 정일영 • 장종태

김문수 • 전진숙 • 박희승

이광희 • 박홍배 • 조 국

조계원 • 추미애 의원
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기존 위원의 무기한 연임이 가능한 상황임.

최근 현행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회 몫 인권위원이 추천되었으나 반인권적 언행 등의 무자격 논란으로 선출안이 부결된 바 있음. 하지만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기존 위원의 직무 수행을 무기한 허용하는 현행법의 한계로 새 위원 선출 없이 연임이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

임명할 것을 명문화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방지하고자 함(안 제5조제8항).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8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되, 임기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⑦	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⑦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	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
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	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
<u>수행한다.</u>	수행하되, 임기가 끝난 날부터
	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
	<u> 여야 한다.</u>